

## 가상화폐 투자자 유의사항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 및 속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자료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담당부서: IT·금융정보보호단, 불법금융대응단, 보도: 2017. 6. 23.금 조간)

### 1.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님

- ①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가상화폐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화폐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가상화폐는 발행자에 의하여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가상화폐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

- ①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습니다.**  
즉,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상화폐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라서**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화폐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3.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

- ①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며,**  
가상화폐의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 재단이 가상화폐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②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4. 가상화폐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

- ① **실물이 없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일단 가상화폐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 ② 흔히들 가상화폐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가상화폐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가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 가상화폐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하며,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가상화폐 또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 ③ 국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화폐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해외시장과 비교하여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과열이 우려됩니다. 아직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며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5.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주의

- ①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암호키(개인키, Private key)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망에 연결된 가상화폐 보관지갑(Hot-Wallet)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상시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암호키만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별도의 저장매체 등(Cold Storage)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 ② 국내에서도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화폐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바가 있으므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이용자보호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책임부담에 대한 약관상 명확한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참고 : 가상화폐 관련 용어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가상화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임의의 암호화 키쌍(공개키, 개인키)을 담고 있는 지갑을 보유합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이용자에게 본인의 공개키를 알려주지만, 일반적으로 암호키(개인키)는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관리합니다.

가상화폐는 네트워크상에서 채굴을 통해 얻거나, 타인과의 거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공개키 (Public Key) : 가상화폐를 송금할 때 계좌번호에 해당

- 이용자는 직접 네트워크상에서 생성하거나 거래소를 통하여 공개키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여러 주소를 제한없이 보유 가능합니다.

#### ◆ 암호키 (Private Key) :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비대칭 키쌍 중에서 공개되지 않고 디지털 서명을 만드는 등 비밀리에 사용하는 개인키

- 이용자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때 등록하고 거래시마다 입력하는 비밀번호와는 서로 다릅니다.
  
- ◆ **가상화폐 보관지갑** : 사용자가 보유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이체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PC 용 지갑 및 모바일 지갑 등이 사용
  
- ◆ **채굴 (Mining)** : 네트워크상에서 가상화폐 시스템이 요구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
  -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므로, 일반인이 채굴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으며,
  - 가상화폐의 발행방식에 따라 채굴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